

강원관광대학 전산실 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 전산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전산실은 대학의 교육·연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산실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
2. 학사 및 행정업무의 정보화
3. 정보 통신망 및 시스템관리
4. 교육지원 및 정보화 지원
5.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 3 조(조직 및 구성) ① 기획처장은 전산실 제반업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전산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전산실 운영 위원회) 전산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실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제 5 조 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, 위원은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6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산실의 운영계획 및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
2. 전산실의 설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전산실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7 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 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0년 6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폐지규정)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정보지원센터 규정은 폐지한다.

제 3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모든 행위는 이 규정에 적용 된 것으로 본다.